

제19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 
( 제 2 차 본 회 의 )  
2013.9.10( 화) 10:00

#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 보고서

**총무위원회**

[ 광 승 옥 ]

## 목 차

1	거창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-----	3
2	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-----	6
3	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-----	8
4	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-----	10
5	거창군 월성우주창의과학관 운영 조례안-----	12
6	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조례안-----	14
7	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-----	16
8	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안-----	18
9	거창승강기벨리 선도기업체 대체업체 유치 동의안 -----	20
10	가조119안전센터 공용건축물 증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안-----	23
11	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-----	26

[ 거창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]  
**심 사 보 고 서**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3. 08. 27.
- 나. 제출자 : 강철우, 조선제, 이애숙의원
- 다. 회부일자 : 2013. 08. 28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3. 09. 06.

## 2. 제안이유

-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,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  - 거창군수는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고,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·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.
- 나. 기본계획 수립(안 제5조)
  -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.

다. 지원사업(안 제6조)

- 군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.

라.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·홍보 (안 제8조, 제9조)

- 군수는 군 소속 기관 공무원, 장애인·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, 사업주 등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·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.

마.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운영(안 제10조, 제11조)

-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를 설치하고, 위원회의 기능은 「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」에서 대행하도록 함.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조례안은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법률」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 등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,

### ○ 그 주요내용을 보면

- **안 제3조** (군수의 책무)는 「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함) 제8조를 구체화한 조항으로 차별 받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군수의 책임을 명시함.  
또한 제2항에서 군수에게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으며,

- **안 제4조** (장애인의 권리와 군민의 협력)는 헌법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이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사회에서 살 권리를 조례에서 확인하는 선언적 규정으로 특이사항 없음.
  - **안 제6조** 실태조사에서는 장애인 차별과 인권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시 조례의 목적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,
  - **안 제8조 및 안 제9조**는 교육과 홍보에 대한 내용으로 차별과 인권 침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군수가 하여야 하는 당연 시책으로 규정하고 있음.
- 따라서 본 조례안은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서 규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중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,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, 제도적 기반을 구축 하는 것으로,
- 제정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**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6. 토론요지 : 해당없음**

**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**

**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**

**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**

#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3. 08. 27.
- 나. 제 출 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3. 08. 28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3. 09. 06.

## 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, 「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」에 맞추어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근거법령 인용조문을 변경함(안 제1조, 제2조, 별지 제2호·제4호서식)
  - (1) 「지방재정법」 제10조 ⇒ 「지방재정법」 제13조
  - (2)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21조 ⇒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26조
- 나.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함(안 제3조 ~ 제7조)
  - (1) 의 규정에 의한(의하여) ⇒ 에 따른(따라)
  - (2) 내지 ⇒ ~ 부터 ~ 까지
  - (3) 기타 ⇒ 그 밖의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개정 조례안은 「지방재정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,
- 개정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# 〔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〕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3. 08. 27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3. 08. 28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3. 09. 06.

## 2. 제안이유

-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상향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생업지원 조항 삭제함(안 제9조)
  - 「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」가 제정·시행(2013.6.12.)됨에 따라 삭제 함
- 나.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용어의 어순을 변경함(안 제10조제1항)
  -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의 유족 ⇒ 전몰군경의 유족과 참전유공자
- 다.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함(안 제10조제2항제1호)
  - 월 5만원(현행) ⇒ 월 8만원(변경)
- 라.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사항을 서식에 반영함(안 별지 제1호·제2호·제3호서식)
  - (1)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, 보유기간 등을 고지함
  - (2)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기재함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상향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서,
- 이 개정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상향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다소나마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
- 개정 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,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#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3. 08. 27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3. 08. 28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3. 09. 06.

## 2. 제안이유

- 저소득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 시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하여 신속하고 책임 있는 업무처리로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시 위원회 심의과정을 삭제함 (안 제10조)
  - 현행 : 장학생의 선발은 읍면장이 매년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읍·면장이 추천한 사람 가운데서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. ⇒ 삭 제 함
- 나.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 및 생활안정지원사업의 융자금에 대한 단서 조항 신설함(안 제11조제3항제2호, 제12조제4항제2호)
  - 신설 : 다만, 거치 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.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개정 조례안은 저소득 장학금 지급대상 선정 시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여 신속하고 책임 있는 업무처리와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 및 생활안정지원사업의 용자금에 대한 거치 기간 중의 이자에 대한 상환부담을 해소하는 등 사회복지사업과 기금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,
- 개정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## 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## 6. 토론요지 : 해당없음

## 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## 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# 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## 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# 거창군 월성우주창의과학관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3. 08. 27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3. 08. 28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3. 09. 06.

## 2. 제안이유

- 청소년들에게 우주과학에 대한 탐구심과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월성우주창의과학관을 운영함으로써 과학문화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가. 과학관의 업무를 정함(안 제3조)
  - 우주·천체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, 어린이·청소년 등에게 과학문화 공간제공, 우주과학지식 보급을 위한 체험·탐구·연구 프로그램 개설·운영 등
- 나. 과학관의 관람시간 및 휴관일을 정함(안 제4조)
  - (1) 관람시간 :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
  - (2) 휴 관 일 : 월요일(다만,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다음날), 1월 1일, 설추석 연휴
- 다. 관람료 기준 및 관람료 면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·제6조·별표)
- 라. 과학관의 관람제한 변상책임 편의시설 설치에 관하여 정함(안 제7조 ~ 제9조)
- 마. 과학관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10조)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제정 조례안은 월성우주창의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들에게 우주과학에 대한 탐구심과 지식 보급, 과학문화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
- 제정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  
위원회 조례안  
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3. 08. 27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3. 08. 28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3. 09. 06.

## 2. 제안이유

- 『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』에서 위임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목적을 정함(안 제1조)
- 나.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정함(안 제2조)
- 다.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정함(안 제3조)
- 라.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정함(안 제4조)
- 마. 간사에 관하여 정함(안 제5조)
- 바.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하여 정함(안 제6조)
- 사.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 정함(안 제7조)
- 아. 의견청취에 관하여 정함(안 제8조)
- 자. 수당 등에 관하여 정함(안 제9조)
- 카. 운영세칙에 관하여 정함(안 제10조)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제정 조례안은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이 2012.3.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
- 제정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3. 08. 27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3. 08. 28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3. 09. 06.

## 2. 제안이유

- 「도서관법령」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변경, 조직개편 사항 반영,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추어 용어순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가. 「도서관법」 개정사항 반영함(안 제1조, 제8조, 제16조)
  - 「도서관 및 독서진흥법」 제21조제22조 ⇒ 「도서관법」 제27조제28조
- 나. 도서관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함(안 제2조)
  - 상림리 774번지 ⇒ 거열로6길 11
- 다.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함(안 제4조제6조제9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5조)
  - 교육문화센터소장 ⇒ 군수, 문화관광과장
- 라. 위원회 구성 시 성별영향분석결과 반영함(안 제16조)
  - 단서 신설 :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%를 넘지 않도록 노력
- 마. 휴관일 자유열람실 이용시간 신설 및 휴관일을 변경함(안 제4조, 제5조)
  - (1) 휴관일 자유열람실 개방시간 : 09:00 ~ 18:00
  - (2) 휴관일 : (현행)월요일 ⇒ (변경)금요일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개정 조례안은 『도서관법』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변경, 조직개편 사항 반영, 『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』에 맞추어 용어순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
- **그 주요내용을 보면**
  - **안 제2조**에서 도서관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,
  - **안 제4조·제6조·제9조·제11조·제12조·제13·제15조**에서 부서명칭 ‘교육문화센터소장’을 ‘군수, 문화관광과장’으로 변경하였으며,
  - **안 제16조**에서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%를 넘지 않도록 하여 성별 영향분석결과를 반영 하였으며,
  - **안 제4조,제5조**에서 휴관일 자유열람실 이용시간 신설 및 휴관일 변경(월요일⇒ 금요일)은 이용자의 편의 도모 및 문화발전에 기여할것으로 사료됨,
- 개정 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

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#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3. 08. 27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3. 08. 28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3. 09. 06.

## 2. 제안이유

- 한센인 정착촌 거주자들이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 집단이주를 하게 되는 경우에 주거환경 개선과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### 가. 지원대상을 정함(안 제3조)

-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한센인 정착촌의 실제 거주가구가 군수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10세대 이상이 이주하는 경우에 지원

### 나. 지원 대상사업을 정함(안 제4조)

- (1) 한센인의 기본적 생활유지를 위한 통상적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사업
- (2) 한센인의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는 권익강화 및 환경 개선사업
- (3)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제정 조례안은 한센인 정착촌 거주자들이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집단이주 시 주거환경 개선과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,
- **그 주요내용을 보면**
  - **안 제3조**에서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한센인 정착촌의 실제 거주가구가 군수가 지정 하는 지역으로 10세대이상이 이주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지원 대상을 정하였고,
  - **안 제4조**에서 한센인의 기본적생활유지를 위한 통상적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사업,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는 권익강화 및 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한 지원계획수립 및 대상사업을 규정 하였음,
- 따라서 이 제정조례안은 한센인의 집단이주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과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
- 제정 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

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[ 거창승강기벨리 선도기업체 대체업체 유치 동의안  
심 사 보 고 서 ]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3. 08. 27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3. 08. 28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3. 09. 06..

## 2. 제안이유

- 제17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에서 동의한 「거창승강기산업벨리 선도기업체 투자유치 지원계획(안)」에 따라 계약체결한 선도기업체의 투자불이행으로 인해 계약해지를 함에 따라 대체업체를 유치하여 성공적인 승강기벨리를 조성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### 가. 투자계획 이행 불가업체 현황

- 회사명 : (주)신한엘리베이타
- 소재지 및 대표자 :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원산리 193-3, 음한욱
- 계약당사자 및 체결일 : 거창군 ⇔ (주)신한엘리베이타, 2011. 1. 12
- 분양면적 및 업체 투자계획

투자위치	부지면적	투자금액	고용인원	투자기간	비고
거창일반산단 5BL, ⑥Lot	3,306m <sup>2</sup> (1,000평)	10.7억원	10명	2011.1월~2014	

○ 우리군 지원사항

지원분야	부지 분양가			비고
	합 계	자 체	보 조(거창군)	
입지보조금	303,710,100원	30,371,010원 (10%)	273,339,090원(90%) [기 지원141,068,610원 잔 액132,270,480원]	

- 투자이행 포기사유 : 현 김포공장이 매각되지 않아 투자자금 확보난
- 조치사항 : 기 체결한 계약서 해지(해제), 기 지원한 보조금 회수

**나. 대체업체 현황 및 투자계획**

- 회사명 : 한국우시오(주)
- 공 장 : 경남 창녕군 남지읍 성사리 558번지
- 설립일 : 2005. 7. 18      ○ 대표이사 : 이민호 외 1명(종업원 14명)
- 기업분류 : 일반법인, 소기업      ○ 업 종 : C31114(선박용 엘리베이터)
- 기업신용등급 : BB-(보통이상)
- 신용흐름등급 : CR2(현금흐름 창출능력이 양호)

**<한국우시오(주) 투자의향>**

- 위 치 :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75번지
- 부지 및 건축면적 : 9,302㎡(2,814평), 1,535.5㎡(464평)건축
- 투자내용 : 1일 상시고용인원 30명, 27억원 투자(2013 ~ 2016)
- 투자조건 : (주)신한엘리베이터에 지원키로 한 각종 지원금 지원
- ※ 입지보조금 303,710천원중(자체 30,371천원, 지원 273,339천원)

**다. 한국우시오(주) 협력업체 유치계획**

- 회사명 : (주)경민 (대표이사 : 황윤경)
- 공 장 : 경남 창녕군 대합면 등지리 264번지
- 설립일 : 2011. 7. 1
- 사업종류 : 선박용 엘리베이터 부품 제조업

**<(주)경민 투자의향>**

- 위 치 :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76번지
- 부지 및 건축면적 : 9,951㎡(3,010평), 1,455㎡(440평)건축
- 투자내용 : 1일 상시고용인원 25명, 31억원 투자(2013 ~ 2016)

## 라. 기존업체와 대체업체간 투자규모 비교

구 분	기존업체	대체업체(협력업체)			비 고
	(주)신한엘리베이터	계	한국우시오(주)	(주)경민	
투자금액	11억	<b>58억</b>	27억	31억	5.3배
고용인원	10명	<b>55명</b>	30명	25명	5.5배
부지면적	3,306㎡ (1,000평)	<b>19,253㎡ (5,824평)</b>	9,302㎡ (2,814평)	9,951㎡ (3,010평)	5.8배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한국우시오(주)는 선박용 엘리베이터 제조업체이며, (주)경민은 한국우시오(주)의 주된 협력업체로서 선박용 엘리베이터 부품 생산업체임
- 한국우시오(주)는 투자이행을 포기한 (주)신한엘리베이터 보다 투자규모와 고용창출 등이 2배 이상 크고, 협력업체인 (주)경민이 함께 투자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실제 5배 이상의 효과가 발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및 성공적인 승강기밸리 조성을 위하여 유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

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[ 가조119안전센터 공용건축물 증축에 따른  
토지사용 동의안 ]  
검 토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3. 08. 27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3. 08. 28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3. 09. 06..

## 2. 제안이유

- 가조119안전센터 청사는 거창군 소유 토지에 경상남도 소유 건물로 당초 신축시에는 지역대 정원 규모로 건축되었으나 안전센터로의 승격후 근무인원 및 장비의 증가에 따라 거창 소방서로부터 청사 증축을 위한 토지사용 승낙요청이 있어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청사증축을 통해 근무환경개선과 소방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토록 토지사용 승낙을 하기 위함

## 3. 주요내용

### 가. 운영현황

- 가조119안전센터는 2005년도 지역대 정원규모로 신축
- 2010년도 안전센터 승격이후 필수공간 협소로 업무수행 애로
  - ※ 2층 옥상에 컨테이너로 임시 공간 활용중

○ 근무현황

지역대		안전센터		비고
근무인원	근무형태	근무인원	근무형태	
4명	2인 2교대	13명	4인 3교대	의무소방원 2명 별도

○ 청사현황

- 토지(소유:거창군) : 가조면 마상리 467-6, 1,026m<sup>2</sup>
- 건물(소유:경남도) : 철근콘크리트조, 2층, 233.62m<sup>2</sup>

○ 운영현황

- 관할지역 : 3개면(가조면, 가북면, 남하면)/3,669세대, 7,275명
- 면 적 : 212km<sup>2</sup>(거창군 전체의 26.4%)

나. 증축규모 : 130m<sup>2</sup>

- 1층 : 14m<sup>2</sup>(현 175m<sup>2</sup>), 2층 : 116m<sup>2</sup>(현 58m<sup>2</sup>)

다. 소요예산 : 236백만원(도비)

라. 추진일정

- 경남도 공유재산심의회 : '13. 8월
- 거창군 협의 및 거창군의회 동의 : '13. 9월
- 공사착공 및 준공 : '13. 10월 ~ 12월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가조119안전센터는 2005년도 지역대 4명의 정원 규모로 신축 하였으나 2010년 안전센터로 승격 근무인원 13명으로 인원 및 장비의 증가에 따라 필수공간 협소로 업무수행 애로와 거창소방서로부터 청사 증축을 위한 토지사용 승낙요청이 있음,
- 소방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 하고 청사 증축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6. 토론요지 : 해당없음
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8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
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[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 
검 토 보 고 서 ]

**1. 검토경과**

- 가. 제출일자 : 2013. 08. 27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3. 08. 28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3. 09. 06..

**2. 제안이유**

- 가조 기미독립만세기념탑은 거창지역의 대표적인 3.1운동 상징물로서 1981년 기념탑건설위원회(민간단체)에서 대대적인 모금운동으로 건립 하였으나, 이후 추가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비를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함

**3. 취득재산의 표시**

○ 토 지

(단위:m<sup>2</sup>, 천원)

일련 번호	재 산 의 표 시			기준가격	취득 시기	취득사유	취득재산 소 유 자
	지목	소 재 지	면 적				
계		4필지	2,203	20,775			
1	전	가조면 장기리 1166-1	509	5,090	'13. 9	봉안각 건립	남하면 양항리 손병섭
2	답	가조면 장기리 1181-1	377	3,491	"	주차장부지사용	신점암
3	답	가조면 장기리 1181-2	391	3,620	"	"	"
4	답	가조면 장기리 1180-1	926	8,574	"	"	창원시 반지동 구본근

#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가조 기미독립만세기념탑은 3,000여명이 참여한 대규모 3.1운동 발생지라는 역사적인 상징물로서 1981년 기념탑건설위원회(민간단체)에서 대대적인 모금운동으로 건립 하였으나, 이후 추가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비를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함
- 3.1운동 희생영령의 명예를 더 높이고, 후손들의 자긍심 고취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위한 현충시설의 품격과 위상을 갖추어 자라나는 2세들에게 민족정신과 애국심 함양을 위하여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

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